

협약서

서울주택도시공사와 (사)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(이하 “양기관” 라 한다)는 주거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거서비스코디네이터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, 상호 긴밀한 협력시스템 구축과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의 교류·협력을 바탕으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전문 인재 양성사업지원에 있어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업무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협약기관)

1. 서울주택도시공사
2. (사)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

제3조 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.

1.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개발 및 (사)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주거서비스 사업 상호 지원
2. 상호 홍보협력 및 공동사업 활성화
3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 (협의 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이 상이하거나 협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 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)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.

제6조 (권리·의무의 승계) 이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7조 (발효 및 유효기간) 이 협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(사)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터 상임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하고, 그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, 양 기관 중 일방이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협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.

제8조 (신의성실) 양 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, 협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에 의해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2월 7일

 서울주택도시공사

김 세 용

(서명)

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터
KOREA HOUSING SERVICE SOCIETY

하 성 규

(서명)